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6선거구, 장상기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
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

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

단독 또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

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

산업부지 확보비율 상한을 40%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○ 이는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

「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」 중

준공업지역 제도개선 부분의 취지를 반영하여

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장부지 등을 대상으로

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

산업시설의 노후화,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따른 열악한 정주환경 등

낙후된 준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로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

부칙에 유효기간을 두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